

# 계약규정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p><b>제3조의2 (청렴계약)</b></p>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규정」 제103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p> <p><b>제12조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b></p> <p>(생략)</p> <p>1. 감정가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p> <p>2. ~ 3. (생략)</p> <p><b>제13조 (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 등)</b></p> <p>① 생략</p> <p>1. (생략)</p> <p>2.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p> <p>3. ~ 5. (생략)</p> <p>② ~ ③ (생략)</p> <p><b>제26조의2 (구매규격 사전공개)</b></p> <p>① 계약요청부서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물품 및 용역의 계약의뢰 전 구매규격을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사전공개를 의뢰하여야 한다.</p> <p>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요청부서에서 작성한 구매규격을 바탕으로 경쟁입찰에</p>	<p><b>제3조의2 (청렴계약)</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규정」 제103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p> <p><b>제12조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b></p> <p>(현행과 같음)</p> <p>1.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p> <p>2. ~ 3. (현행과 같음)</p> <p><b>제13조 (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 등)</b></p> <p>① 생략</p> <p>1. (생략)</p> <p>2.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p> <p>3. ~ 5. (생략)</p> <p>② ~ ③ (생략)</p> <p><b>제26조의2 (구매규격 사전공개)</b></p> <p>① 계약요청부서는 물품 및 용역을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뢰 전 구매규격을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사전공개를 의뢰하여야 한다.</p> <p>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요청부서에서 작성한 구매규격을 바탕으로 경쟁입찰에</p>

현행	개정
<p>부치고자 할 때에는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제공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부치고자 할 때에는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제공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u></li> <li>2. <u>추정가격 1 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u></li> <li>3. <u>해당연도에 1 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u>구매규격 사전공개는 회사 계약관리시스템 또는 한전전자조달시스템(SRM) 등을 통해 5 일간 공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일간 공개할 수 있다.</u></li> <li>④ ~ ⑤ (생략)</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물품제조·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u></li> <li>2. <u>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u></li> <li>3. (삭제)</li> <li>③ <u>구매규격 사전공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5 일간 공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일간 공개할 수 있다.</u></li> <li>④ ~ ⑤ (현행과 같음)</li> </ol>
<p><b>제34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b>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5. (생략)</li> <li>6. <u>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 나. (생략)</li> <li>다. <u>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경우(용역은 제외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u></li> </ol> </li> <li>7. - 10. (생략)</li> </ol>	<p><b>제34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b>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5. (현행과 같음)</li> <li>6. <u>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 나. (현행과 같음)</li> <li>다. <u>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경우(용역은 제외한다) :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u></li> </ol> </li> <li>7. - 10. (현행과 같음)</li> </ol>
<p><b>제37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b>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5. (생략)</li> </ol>	<p><b>제37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b>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5. (현행과 같음)</li> </ol>

현행	개정
<p>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p> <p>7. ~ 9. (생략)</p> <p><b>제54조 (입찰공고)</b></p> <p>① ~ ④ (생략)</p> <p>⑤ (생략)</p> <p>1. ~ 3. (생략)</p> <p>&lt;신설&gt;</p> <p>4. (생략)</p> <p>&lt;신설&gt;</p> <p>5. ~ 15. (생략)</p> <p>&lt;신설&gt;</p> <p>16. (생략)</p> <p><b>제60조 (입찰의 무효)</b></p> <p>① (생략)</p> <p>1. ~ 12.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② (생략)</p> <p>&lt;신설&gt;</p>	<p>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p> <p>7. ~ 9. (현행과 같음)</p> <p><b>제54조 (입찰공고)</b></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u>3의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u></p> <p>4. (현행과 같음)</p> <p><u>4의2. 이 규정 제61조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u></p> <p>5. ~ 15. (현행과 같음)</p> <p><u>15의2.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u></p> <p>16. (현행과 같음)</p> <p><b>제60조 (입찰의 무효)</b></p> <p>① (현행과 같음)</p> <p>1. ~ 12. (현행과 같음)</p> <p><u>13. 이 규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u></p> <p>② (현행과 같음)</p> <p><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으로 당초 입찰공고 시 요구되는 사항이 미충족시 해당입찰건은 무효로 한다.</u></p>

현 행	개 정
<p><b>제61조의3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b></p> <p>① (생략)</p> <p>1. ~ 5. (생략)</p> <p>6. 「<u>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u>」 제2조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p> <p>7. ~ 8. (생략)</p> <p>② (생략)</p> <p><b>제99조 (공동계약)</b></p> <p>① (생략)</p> <p>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u>주된 영업소가 있는</u>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략)</p> <p>③ ~ ④ (생략)</p> <p>&lt;신설&gt;</p> <p><b>제107조 (계약관련 법령 등의 준수)</b></p> <p>우리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p>	<p><b>제61조의3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b></p> <p>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콘텐츠산업 진흥법</u>」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p> <p>7.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99조 (공동계약)</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u>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위치한</u>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b>제103조의3 (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b></p> <p>① 사장은 「<u>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u>」(이하 “원전감독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협력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는 「원전감독법」을 준수한다.</p> <p><b>제107조 (삭제)</b></p> <p>(삭제)</p>

현행	개정
<p>산업 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적용대상인 경우 해당 법령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b>제110조 (업무절차)</b></p> <p>① (생략)</p> <p>② 수의계약의 객관성,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u>수의계약운영업무절차</u>」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b>제110조 (업무절차)</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수의계약의 객관성,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u>표준 수의계약운영지침</u>」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부 칙</p> <p>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 계약관리업무절차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p><b>제2조 (적용범위)</b> 회사의 모든 수주 및 발주사업의 계약체결 및 계약사후관리에 있어 계약서, 관계 법령 및 사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u>이 절차에 의하며 EPC 기자재 구매의 세부절차는 EPC건설사업관리절차서의 내용을 따를 수 있다.</u></p> <p><b>제3조의2 (계약관리시스템)</b> (생략)</p> <p>1. 개발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계획 품의 및 계약의뢰를 하여야 하며, 계약부서도 계약의 추진 및 체결 품의 시 계약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u>다만, 현장발주공사의 계약, 긴급을 요하는 계약, 예비품 계약 등 계약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부서는 계약체결 후 계약사항을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u></p> <p>2. ~ 4. (생략)</p> <p><b>제12조 (발주계획 품의서의 작성)</b> ① (생략) 1. ~ 6. (생략) &lt;신설&gt; ② ~ ④ (생략) ⑤ 국내 발주계획 품의의 경우 지명경쟁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는 <u>협력업체운영 업무절차, 기자재공급자운영업무절차 및 관련 절차서에</u>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생략)</p>	<p><b>제2조 (적용범위)</b> 회사의 모든 수주 및 발주사업의 계약체결 및 계약사후관리에 있어 계약서, 관계 법령 및 사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u>이 절차를 따른다.</u></p> <p><b>제3조의2 (계약관리시스템)</b> (현행과 같음)</p> <p>1. 개발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계획 품의 및 계약의뢰를 하여야 하며, 계약부서도 계약의 추진 및 체결 품의 시 계약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u>위임전결규정</u>」 별표4(<u>현장사무소업무 전결권한표</u>)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추진하는 계약 중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부속서류 일체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p> <p>2. ~ 4. (현행과 같음)</p> <p><b>제12조 (발주계획 품의서의 작성)</b>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u>사전공개 여부, 사전공개에 따른 이의제기 여부</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내 발주계획 품의의 경우 지명경쟁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는 <u>협력업체 운영업무절차 등 관련 절차서에</u>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b>제17조 (현장설명)</b></p> <p>① ~ ② (생략)</p> <p>③ 현장설명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역무분야의 기술자 자격수첩을 가진 자(기사1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자격요건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현장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p> <p><b>제20조의2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b></p> <p>① ~ ⑦ (생략)</p> <p>&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물품구매 발주계약(국내조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절 계약 절차 및 방법</b></p> <p><b>제46조 (발주계획 품의서의 작성)</b></p> <p>① 구매요구부서는 <u>계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계획 품의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의 협조를 얻어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통제 및 감사담당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u></p> <p>② ~ ③ (생략)</p> <p>④ (생략)</p>	<p><b>제17조 (현장설명)</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장설명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역무분야의 기술자 자격수첩을 가진 자(기사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자격요건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현장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p> <p><b>제20조의2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b></p> <p>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계약규정」 제61조의2를 적용받는 용역 및 물품 입찰인 경우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방법 및 절차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동일하다. 단, 규정 제7조의2에 의해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제반여건에 따라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물품구매 발주계약(국내조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절 계약추진 및 체결</b></p> <p><b>제46조 (발주계획 품의서의 작성)</b></p> <p>① 구매요구부서는 예산확보 후 계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계획 품의서를 작성하고 「위임전결규정」 별표2(행정업무전결권한표)에 의거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1. (생략)</p> <p>2. <u>납품 기한</u></p> <p>3. (생략)</p> <p>&lt;신설&gt;</p> <p>⑤ ~ ⑧ (생략)</p> <p><b>제47조 (발주계약 의뢰서의 접수 및 검토)</b></p> <p>① 계약부서는 <u>발주계약 의뢰서를 접수하면</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p> <p>1. ~ 3. (생략)</p> <p>4. <u>납품장소 및 요청납기의 합리성 여부</u></p> <p>5. ~ 7. (생략)</p> <p>&lt;신설&gt;</p> <p>② 제1항의 검토결과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u>발주계약 의뢰서를 구매요구부서로 반송하여</u>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한다.</p> <p>&lt;신설&gt;</p> <p><b>제48조 (물품구매계획의 수립)</b></p> <p>① (생략)</p> <p>1. 일반경쟁, 지명경쟁, <u>수의 등</u> 제반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과 근거 및 수의 계약의 경우 시담상대자</p> <p>2. ~ 1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u>납품 기한, 납품 방법, 납품 장소</u></p> <p>3. (현행과 같음)</p> <p>4. <u>구매규격 사전공개 여부, 사전공개에 따른 이의제기 여부</u></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p><b>제47조 (발주계획 품의서의 검토 및 협조)</b></p> <p>① 계약부서는 <u>발주계획 품의서 접수 시 발주계획의 적정성에 대해</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납품 기한, 납품 방법, 납품 장소의 합리성 여부</u></p> <p>5. ~ 7. (현행과 같음)</p> <p>8. <u>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여부</u></p> <p>② 제1항의 검토결과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u>발주계획 품의서를 구매요구부서에 회송하여,</u>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한다.</p> <p>③ <u>구매요구부서는 발주계획 품의서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계약 의뢰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u></p> <p><b>제48조 (계약의 추진)</b></p> <p>① (현행과 같음)</p> <p>1. 일반경쟁, 지명경쟁, <u>제한경쟁, 수의 등</u> 제반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과 근거 및 수의계약의 경우 시담상대자</p> <p>2. ~ 11.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② (생 략)</p> <p>③ 계약부서는 공사별 일괄구매 또는 주기와 부속물품의 일괄구매가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구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계약부서는 물품별 일괄구매 또는 주기와 부속물품의 일괄구매가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구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62조 (계약의 통보 및 계약관리)</b></p> <p>① 계약부서는 계약체결 후 구매요구부서 등 관련부서에 계약내용을 전자 조달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물품구매적격심사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해 제조사가 아닌 단순공급자와 계약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계약이행업체 내역서를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구매요구부서는 송부된 계약서 등 계약관련서류를 숙지하여 계약관리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계약물량의 증가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관련 절차에 의거 계약부서에 계약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p>	<p><b>제62조 (계약의 통보 및 계약관리)</b></p> <p>① 계약부서는 제27조를 준용하여 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주요 계약내용을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요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물품구매적격심사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해 제조사가 아닌 단순공급자와 계약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계약이행업체 내역서를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구매요구부서는 송부된 계약서 등 계약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계약관리를 하여야 한다.</p>
<p><b>제65조 (납기 및 납품장소의 변경)</b></p> <p>①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변경계약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과 규격, 납기 및 납품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p> <p>1.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한 변경  <u>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납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매요구 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제출받아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고 적기에 계약변경이 될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 변경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u></p> <p>2. <u>우리회사 사정에 의한 변경</u>  <u>우리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납기 및 납품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매요구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납기 및 납품장소 등에 대한 변경동의서를 받아 계약부서에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u></p>	<p><b>제65조 (계약의 변경)</b></p> <p>①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변경계약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u>우리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u> 계약된 물품의 수량, 규격, 설계, 납기, 납품장소, 납품방법 등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p> <p>1. <u>구매요구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변경의 내용을 포함한 변경요청서를 발송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요청에 대한 변경동의서를 접수 하여야 한다.</u></p> <p>2. <u>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변경이행 착수 이전에 계약부서로 계약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변경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변경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
<p>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b>제67조 (검수)</b>  구입 또는 기타의 사유로 납품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약정된 수량, 가격, 기타의 계약조건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u>검수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절 <u>계약이행, 독촉 및 관리</u></b></p> <p><b>제81조 (납품일)</b>  <u>납품일은</u> 계약상의 목적물이 검수완료된 날로 한다. 재납품 된 경우 재납품분이 검수완료된 날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물품구매 발주계약(해외조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절 <u>구매계획</u></b></p> <p><b>제91조 (구매요구)</b>  ① <u>구매요구 절차는</u>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②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변경을 추진할 경우에는 계약조건,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근거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67조 (검수)</b>  구입 또는 기타의 사유로 납품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약정된 수량, 외관, 치수, 성능 등 기타의 계약조건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u>검수 또는 검사(이하 '검수')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절 <u>계약관리</u></b></p> <p><b>제81조 (납기)</b>  <u>납기는</u> 계약상의 목적물이 검수 완료된 날로 한다. 재납품 된 경우 재납품분이 검수 완료된 날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물품구매 발주계약(해외조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절 <u>계약추진 및 방법</u></b></p> <p><b>제91조 (발주계획 품의서의 작성)</b>  ① <u>물품구매 대상, 발주계획 품의서 작성 절차는</u>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b>제92조 (발주계약 의뢰서의 검토 및 보완)</b></p> <p>구매요구부서는 계약부서가 <u>구매요구서</u>를 검토한 후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b>제92조 (발주계획 품의서의 검토 및 협조)</b></p> <p>① 구매요구부서는 계약부서가 <u>발주계획 품의서</u>를 검토한 후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p> <p>② 발주계획 품의서의 검토 및 협조는 제47조를 준용한다.</p>
<p><b>제93조 (구매계획의 수립)</b></p> <p>① <u>구매계획</u>의 수립은 제48조를 준용한다.</p> <p>② 계약부서는 제1항의 <u>구매계획</u>에 따른 입찰안내서 또는 공급제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b>제93조 (계약의 추진)</b></p> <p>① <u>계약</u>의 추진은 제48조를 준용한다.</p> <p>② 계약부서는 제1항의 <u>계약</u>의 추진 따른 입찰안내서 또는 공급제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96조 (입찰참가신청)</b></p> <p>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u>입찰참가</u> 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입찰이외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직접방문, 우편, e-mail, FAX전송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e-mail 및 FAX전송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을 조속히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b>제96조 (입찰참가신청)</b></p> <p>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u>입찰에 참가</u>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이외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직접방문, 우편, <u>email</u>로 제출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104조 (신용장개설 및 대가지급)</b></p> <p>① 계약부서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특례규정」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신용장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을 개설한다.</p> <p>② (생 략)</p>	<p><b>제104조 (신용장개설 및 대가지급)</b></p> <p>① 구매요구부서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0조제1항 또는 계약조항에 의거하여 신용장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u>직제규정 시행세칙</u>」에서 신용장 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신용장을 개설을 의뢰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105조 (검사)</b></p>	<p><b>제105조 (검수)</b></p>

현행	개정
<p>① <u>검사는 제4장의 절차에</u> 준하여 처리한다.</p> <p>② 계약부서는 <u>검사방법에</u> 대한 구매요구부서의 의견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품(이하 “외국산 물품” 이라 한다)의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u>검사증명서로서</u>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① <u>검수는 제4장 제3절의 절차에</u> 준하여 처리한다.</p> <p>② 계약부서는 <u>검수방법에</u> 대한 구매요구부서의 의견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품(이하 “외국산 물품”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u>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검사증명서에 대해</u> 인수부서의 서면승인 또는 <u>인수부서가 작성한 검수확인서로</u> 검수를 갈음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EPC기자재구매 발주계약</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절 계약추진 및 체결</b></p> <p><b>제114조 (EPC기자재 구매계약 대상)</b></p> <p>① <u>국내·외에서</u> 수주한 EPC사업(이하 수주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EPC기자재 제조·구매계약, 기자재구매 관련 기타 제 계약(설치조건부 구매계약, 기자재 설치 및 성능시험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용역계약) (이하 EPC기자재 구매계약)을 그 대상으로 한다.</p> <p>② <u>구매요구부서는</u> 원활한 계약추진 및 체결업무를 위해 EPC기자재 구매단위목록과 구매종합공정표 확정 이전에 계약부서로 사전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p> <p><b>제115조 (발주계획 품의서 작성)</b></p> <p>① 발주계획 품의서 작성은 제12조, 제46조를 준용한다.</p> <p>② <u>구매요구부서는 「계약규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계약규정과 상이한 수주계약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u></p> <p>③ <u>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운영업무지침」에 따라 발주계획 품의서 작성 이전에 사전공개용 구매규격을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사전공개를 의뢰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p>&lt;신 설&gt;</p>	<p><b>제116조 (발주계획 품의서의 검토 및 협조)</b></p> <p>① 발주계획 품의서 검토 및 협조는 제47조를 준용한다.</p> <p>② 구매요구부서는 수주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 요구사항의 이행, 사업정보의 비밀유지, 사업완료기한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규정 제100조(계약의 특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약의 방법(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계획 품의서에 발주처가 승인한 하도급자 승인공문 또는 하도급자 목록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수주사업의 여건에 따라 국제입찰을 시행해야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입찰공고기간 등의 소요일을 고려하여 발주계획 품의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b>제117조 (계약의 추진)</b></p> <p>① 계약의 추진은 제48조, 제93조를 준용한다.</p> <p>② 제1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명한 업체로 한정된 지명경쟁 또는 수의 시담으로 진행하거나, EPC기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국제입찰을 진행해야하는 경우에는 계약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2항과 달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지 않고 회사의 계약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RFQ(Request for Quotation, 전자 견적의뢰서)를 발송함으로써 입찰관련 서류의 비치 및 열람을 갈음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b>제118조(입찰 절차)</b></p> <p>① 입찰절차는 제5장 물품구매 발주계약(해외조달) 제2절 입찰 및 낙찰절차 중 입찰관련 절차를 준용한다.</p> <p>② 계약부서는 수주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주가 지명한 자로 한정하여 회사 계약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RFQ를 발송함으로써 입찰공고를 대체할 수 있다.</p> <p>③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계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이전에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신 설>	<p><b>제119조(낙찰자 결정)</b></p> <p>① 낙찰자 결정은 계약규정 제61조 및 본 절차 제101조를 준용한다.</p> <p>② 입찰공고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1단계 평가결과 적격인 자가 제출한 입찰서만 회사 계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봉한다.</p> <p>③ 가장 경쟁력 있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해외업체인 경우에는 1순위 우선협상대상로 선정하여 계약협상을 시행한 이후에 낙찰자로 선정하고, 국내 업체인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한다.</p>
<신 설>	<p><b>제120조(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b></p> <p>①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은 제61조, 제102조를 준용한다.</p> <p>②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가 해외업체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 계약상대자가 해외업체로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0조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EPC 기자재 구매계약에서 허용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신 설>	<p><b>제121조(계약의 통보 및 계약관리)</b></p> <p>① 계약의 통보 및 계약관리는 제62조를 준용한다.</p> <p>② 제120조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서를 계약체결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 계약부서는 그 보증서의 수령 즉시 구매요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p>
<신 설>	<p><b>제2절 계약관리</b></p>
<신 설>	<p><b>제122조(납기관리)</b></p> <p>① 납기관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단, 제64조 제2항의 의한 통보부서에 계약부서는 제외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신 설>	<p>② 구매요구부서는 제작공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월간공정보고서 등)를 접수 및 검토하여, 제작을 독려하고 납기 내에 기자재의 납품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약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작 독려, 검수(검사), 대가지급, 운송, 통관, 인수, 하자 등 계약 체결통보 이후부터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구매(계약)관리의 상세업무절차는 「EPC건설사업관리절차서」에 따른다.</p> <p><b>제123조(계약의 변경)</b></p> <p>① 계약의 변경은 제65조를 준용한다.</p> <p>②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변경은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처 요구사항의 이행, 사업완료기한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고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p>
<신 설>	<p><b>제 3절 계약종료</b></p>
<신 설>	<p><b>제124조(준공검사보고서)</b></p> <p>① 구매요구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의무가 종료되면 대금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서류를 준비하고 별지 제17호서식(준공검사보고서)을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구매요구부서는 준공검사보고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미사용 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응락서)를 징구하여 변경계약을 갈고 하고 응락서 사본을 준공검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시공관련 금액</li> <li>2. 현장설치를 위한 기술지원용역비 또는 교육훈련비 등의 잠정금액</li> </ol> <p>③ 구매요구부서는 「기자재공급자 운영업무절차」 별지 제5호서식(납품이행 실적평가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납품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납품이행실적 평가표 사본을 준공검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별지 제1호부터 제15호서식(생 략) 별지 제16호서식 제 차 기성고 검사보고서(별첨1) 별지 제17호서식 준공보고서(별첨2)	별지 제1호부터 제15호서식(현행과 같음) 별지 제16호서식 제 차 기성고 검사보고서(별첨1) 별지 제17호서식 준공보고서(별첨2)
부 칙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	

별첨 1.

(현행)

별지 제16호서식

# 제 차 기성고 검사보고서



해당사업체명

1. 계약 번호
2. 계약 명
3. 계약 상대자
4. 계약 금액
  - 공급 가 액
  - 부가 가치세
  - 합 계
5. 검 사 내 역

(단위 : 원)

구 분	전회까지 기성고 누계	금회 기성고	기성고 사정 누계액	
			기성율	사정액
공급 가 액				
부가가치세				
합 계				
<input type="checkbox"/> 기성고 사정기간 <input type="checkbox"/> 기성고 검사일 (신 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작성일 및 계약상대자 인감대조를 확인합니다.

교부받은 일자 담당자

명에 의하여 기성고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검사자							
검사자							

(개정)

별지 제16호서식

# 제 차 기성고 검사보고서



해당사업체명

1. 계약 번호
2. 계약 명
3. 계약 상대자
4. 계약 금액
  - 공급 가액
  - 부가 가치세
  - 합 계
5. 검사 내역

(단위 : 원)

구 분	전회까지 기성고 누계	금회 기성고	기성고 사정 누계액	
			기성율	사정액
공급 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input type="checkbox"/> 기성고 사정기간 <input type="checkbox"/> 기성고 검사일 <input type="checkbox"/> 비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작성일 및 계약상대자 인감대조를 확인합니다.

교부받은 일자

담당자

명에 의하여 기성고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검사자							
검사자							



(개정)

별지 제17호서식

# 준공검사보고서



해당사업체명

1. 계약 번호
2. 계약 명
3. 계약 상대자
4. 계약 준공일
5. 실 준 공 일
6. 검 사 내 역

(단위 : 원)

구 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계
계약금액 (A)			
정산 증감액(B)			
정산변경금액 (C=A+B)			
전회까지의 기성고 누계(D)			
금회지출액(E=C-D)			
<input type="checkbox"/> 준공검사일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발행일			
<input type="checkbox"/> 비고			
<p>세금계산서(계산서) 수령 및 계약상대자 인감대조를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담 당 자 (인)</p> <p>명에 의하여 기성고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p> <p>준공검수자                                  준공인수자                                  입 회 자</p>			
		계 약 팀 장	

○ 계약금액을 위와 같이 정산변경 감액(증액)함에 동의합니다.

(정산변경내역은 붙임 첨부)

현장대리인